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담배 무인판매 금지〉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4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담배 무인판매 금지 (안 제12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의2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23.

다. 회 부 일 : 2024.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인점포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경우가 많으며, 설령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객들의 나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가 무인점포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매인으로 하여금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담배 무인판매 금지 (안 제12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의2 등)

현 행	개 정 안
☐ 담배의 무인 판매 금지 ☐ <신 설>	☐ 담배의 무인 판매 금지 ☐ <u>소매인은 영업장 내 자동판매기를 갖추어서 무인(無人)으로 영업하는 다중이용업소(이하 이 법에서 “무인점포”라 한다)에서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안 제12조제5항)</u>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 <신 설>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 <u>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한 경우 (안 제17조제2항제1호의2)</u>

개정안은 영업장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무인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인으로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현행법은 소비자에게 담배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하는 한편,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우편판매와 전자거래를 금지하고 있음¹⁾. 다만, 영업장에서 종업원을 두지 않고 판매하는 무인판매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1)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①~③ (생략)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개정안은 무인점포를 통한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증진법」²⁾은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인점포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성인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성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대면으로 담배를 구매할 경우 신분증과 구매자 본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무인 점포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분증과 구매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사업법」을 통해 무인점포를 통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경우, 무인 판매 근절을 통해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 감소와 이에 따른 청소년 흡연을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무인 판매는 노동력 감소와 임금 상승 추세에 대응한 담배 소매인의 비용 절감 방안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노동력의 감소와 이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담배 소매업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하는 상황에서 담배 무인 판매를 금지할 경우, 영세 담배 소매업자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또한 담배 이외의 소비재에 대한 무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담배의 무인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변화 흐름에 반대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상 신분증 확인 절차³⁾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둘째, 현행 제도의 활용 노력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는 바, 무인점포를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4)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통해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정지가 가능함. 따라서 무인점포를 통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무인점포를 통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⁵⁾.

한편, 현행법은 금지되고 있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를 통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소매인 영업정지가 아니라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담배 무인판매 금지가 도입될 경우, 담배의 판매 방법 규제 위반에 대한 통일적 제재수단 도입의 측면에서 벌금 부과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담배 자동판매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 차단이 가능하므로 규제 신설보다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대표업종인 편의점 등이 야간무인 판매 전환으로 수익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규제 신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참고로,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보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형벌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설은 소상공인의 사업활동에 큰 제약이 되므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미성년자의 담배구입을 차단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 ④ (생략) <신설>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 ④ (헌행과 같음) ⑤ 소매인은 영업장 내 자동판매기를 갖추어서 무인(無人)으로 영업하는 다중이용업소(이하 이 법에서 “무인점포”라 한다)에서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생략)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헌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 8. (생략) ③ (생략)	② ----- ----- ----- ----- ----- . ----- ----- ----- ----- ----- ----- ----- ----- ----- ----- ----- ----- ----- . 1. (헌행과 같음) <u>1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인 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했던 경우</u> 2. ~ 8. (헌행과 같음) ③ (헌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판매 및 무인점포 내 담배 판매에 대한 영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150

